

4 벤처창의교육원 규정

제정 2017. 9. 1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교육원은 호서대학교 벤처창의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 및 업무) ① 교육원은 “벤처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 양성” 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수립 및 운영 방향을 연구하고,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비교과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교육원은 교육선도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, 현장실습지원, 학생지도 및 상담지원, 학생봉사활동지원, 우수인재육성교육지원 및 각 프로그램 성과평가와 환류 지원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3조 (구성) ① 교육원에는 CanDo교육팀과 교수학습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Caritas상담센터, Caritas봉사센터, 벤처프런티어교육센터를 두고, CanDo교육팀을 통해 각 센터 업무를 지원·관리한다.

② 교수학습센터에는 교수법지원부, 학습법지원부, 교육매체지원부, 의사소통지원부, 행정지원부를 둔다.

제4조 (원장 및 센터장 등)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,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 필요에 따라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.

②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1명 씩 두고,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 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개별 센터 운영을 총괄하며,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한다.

③ 교육원 산하 각 센터에서는 센터 특성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교수,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
제5조 (위원회 등) ① 교육원에는 벤처창의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각 센터는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별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 3 장 기 능

제6조 (기능 및 업무) ① CanDo교육팀은 대학인재상에 부합하는 CanDo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, 교육원 산하 센터 지원 등을 담당한다.

② 교수학습센터는 대학교육의 수월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수 및 학습법 개발 연구와 교육, 컨설팅, 교육매체 제작 지원, 사이버 강의 지원 및 운영 등 대학교육과 관련한 전문적 연구 개발 및 교수-학습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산업체 연계교육을 통한 실용학문 구현과 재학생의 전공학문 현장응용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Caritas상담센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의 지도, 상담 및 연구와 학내 성희롱 등 성 고충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Caritas봉사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함으로 본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,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·관리, 호서봉사단 운영·관리, 사회봉사 활동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⑥ 벤처프런티어교육센터는 벤처정신을 지닌 인재를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는 벤처프런티어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7조 (사무분장) 벤처창의교육원 사무분장의 대강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고, 그 세부 사항은 팀별·센터별 업무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위원회

제8조 (벤처창의교육원 운영위원회) ① 원장은 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벤처창의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, 센터장, 교무부처장, 더:함 교양대학 부학장 및 CanDo교육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예·결산
2. 교육원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3. 각 팀과 센터의 유기적인 업무조정
4.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·심의
5. 기타 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의결

제9조 (캔두리더연구위원회) ① CanDo교육팀에는 캔두리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캔두리더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고,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캔두리더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창의성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대학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기타 캔두리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 (교수학습 운영위원회) ① 교수학습센터에는 교수·학습역량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고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, 기획, 인재개발, 창업지원, 국고보조사업단의 책임급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·학습역량증진에 관한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수·학습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·운영
3. 기타 교수·학습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④ 기타 위원회로 스마트교수학습지원시스템(LMS 시스템) 운영과 권역 센터와의 학점교류 등 원격(사이버)강의 활성화 방안 등 주요사항(사이버 강의 발전 및 콘텐츠 품질 등)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매체제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센터장, 부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제11조 (현장실습 운영위원회) ①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고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 부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현장실습지원센터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현장실습지원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2조 (상담센터 운영위원회) ① Caritas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담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고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Caritas상담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 (봉사센터 운영위원회) ① Caritas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고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교 교직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Caritas봉사센터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Caritas봉사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4조 (벤처프런티어 운영위원회) ① 벤처프런티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프런티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두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기획부처장, 교무부처장(학사담당), 벤처창업교육원장, 국제협력원장 및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본 프로그램 실무조교가 된다.

제 5 장 환 류

제15조 (만족도조사) 벤처창업교육원은 매년 1회 이상 센터별 수요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관련규정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학생생활상담소 규정, 사회봉사센터 규정, 교수학습센터 규정은 폐지한다.

<표-1>

< 벤처창업교육원 조직도 >

